



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 안내

-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**당첨자 본인 1인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며,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1인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**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자에 대한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-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당한 당첨자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-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신 분들은 소명기간 내에 당첨자 삭제 및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원활한 서류 접수를 위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오니, 이점 양지하시어 예약접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접수 기간동안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 [2022.2.21(월)~2.27(일) 7일간]이 가능합니다.
- 서류접수 장소는 건물주차가 불가 하오니, 인근 공용주차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자격검증 일정 안내

구분	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		당첨자 계약 체결
일정	22.1.6(목) ~ 1.10(월) 총 5일간	22.1.11(화) ~ 1.13(목) 총 3일간	22.2.21(월) ~ 2.27(일) 총 7일간
대상	특별공급, 일반공급 당첨자	예비당첨자 (특별공급, 일반공급)	당첨자 중 자격 검증 완료자
방법	현장접수(홈페이지 예약제 운영)		계약장소 추후 공지
장소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번지 (창신프라자) 6층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첨자 별 자격 확인 서류는 「당첨자 서류접수 안내문」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• 모든 증빙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1.12.17) 이후 발급분만 해당됩니다. • 모든 서류는 '상세 표기'로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.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 내역,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) • 당첨자 자격 확인 시 안내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• 질병관리청, 인천광역시 코로나19 관련 및 지침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, 접수방법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• 코로나19 감염 증상(발열 37.5도 이상, 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, 마스크 미착용 하신 분 등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• 방문 예약제는 당첨자 본인 인적 사항으로만 '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'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(배우자 포함)은 당첨자 인적 사항으로 예약 후 대리인 방문 가능합니다. ※ 당첨자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지참 •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자격 확인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 •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 [2022.2.21(월) ~ 2.27(일), 7일간]이 가능합니다. •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. 이하 같음)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및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"<표4>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"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,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. 		
문의전화	• 1600-7986 (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		

■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안내

※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따른 확산 방지 및 잔여세대 공급수량을 고려하여 전체 예비입주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순번의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사전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차순위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.

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대상자	
특별공급	일반공급
59A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304번 59B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70번 59C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70번	59A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55번 59B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13번 59C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13번 59P1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05번 59P2 타입 : 예비순번 001번 ~ 005번



당첨자 서류접수 안내문 [일반공급]

■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	○		서약서	본인	[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]
	○		개인정보수집·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(자산·소득 조회용)	본인	[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] ※ 당사 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(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,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	○		신분증	본인	당첨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본인	※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본인	※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구성명/관계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(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"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"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혼인 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'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'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재직증명서	본인	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장애인 등록증 (복지카드) 또는 세대내 나이 증빙서류	대상자	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.(금)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
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(위임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위임장 (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) ※ 인감도장 날인 필수
	○		주민등록증	대리인	대리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
	○		인장	대리인	서명 또는 날인



당첨자 서류접수 안내문 [특별공급 ①]

■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 (기관추천 특별공급)	○		서약서	본인	[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]
	○		개인정보수집·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(자산·소득 조회용)	본인	[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] ※ 당사 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(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,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	○		신분증	본인	당첨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본인	※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본인	※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(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○	장애인 등록증 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	대상자	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	○		재직증명서	본인	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본인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.(금)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(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)	
다자녀 특별공급	○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 (또는 배우자)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본인	입양의 경우
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(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)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'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'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'상세'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.(금)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장애인 등록증 (복지카드)	피부양 직계존속	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자



당첨자 서류접수 안내문 [특별공급 ②]

■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'상세 내역'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,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'상세 내역'을 포함하여 발급 ※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사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
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당첨된 경우 및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		○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입양의 경우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(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)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,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
		○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예비배우자	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)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직계존속	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자녀	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	○	소득세납부 입증서류 (아래 <표7> 참고)	본인	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<표7>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(위임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위임장 (홈페이지 및 현장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) ※ 인감도장 날인 필수
	○		주민등록증	대리인	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
	○		인장	대리인	서명 또는 날인

<표7>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/세무서